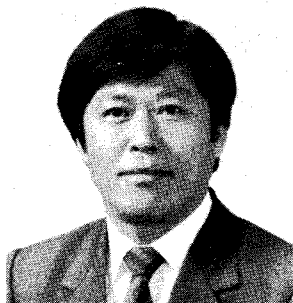


日本の 特許管理 教育考察(4)



安 鍾 喆
〈特許廳 指導課 事務官〉

目 次

- I-1 工業所有權制度의 基礎知識
 - 工業所有權制度(特許制度)의 目的
 - 1. 特許制度의 基礎知識
 - 2. 實用新案制度의 基礎知識
 - 3. 意匠制度의 基礎知識
 - 4. 商標制度의 基礎知識
 - 5. 特許權等の 保護 對象
 - 6. 特許廳에 있어서의 審査節次
 - 7. 審判制度의 基礎知識
 - 8. 權利의 發生에서 消滅까지
 - 9. 特許權者의 義務
 - 10. 特許(實用新案) 出願의 早期審査節次
 - 11. 特許(實用新案) 出願의 審判事件에 있어서 早期審理의 節次等
 - 12. 法改正 動向
- I-2 國際出願의 活用
 - 1. PCT의 概要
 - 2. PCT의 意義
 - 3. PCT 締約國一覽
 - 4. 在來절차와 PCT절차와의 比較
 - 5. 日本特許廳에 한 國際出願의 자리
 - 6. FAX를 利用한 國際出願의 提出
 - 7. 國際出願關係手數料
 - 8. 優先權書類의 提出節次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 및 다음號〉

〈前號에서 계속〉

3) 審判請求에서 審決까지

審判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査定系의 審判과 當事者系의 審判으로 分類할 수 있으며, 각기 그 節次를 달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査定系의 審判은 審査의 續審으로 持稱되는 것으로 그 節次에 있어서는 審査의 規定이 準用되며 또한 審査에 있어서 行해진 節次는 審判에 있어서도 그 効力を 갖게된다.

審判請求에서 審決까지의 節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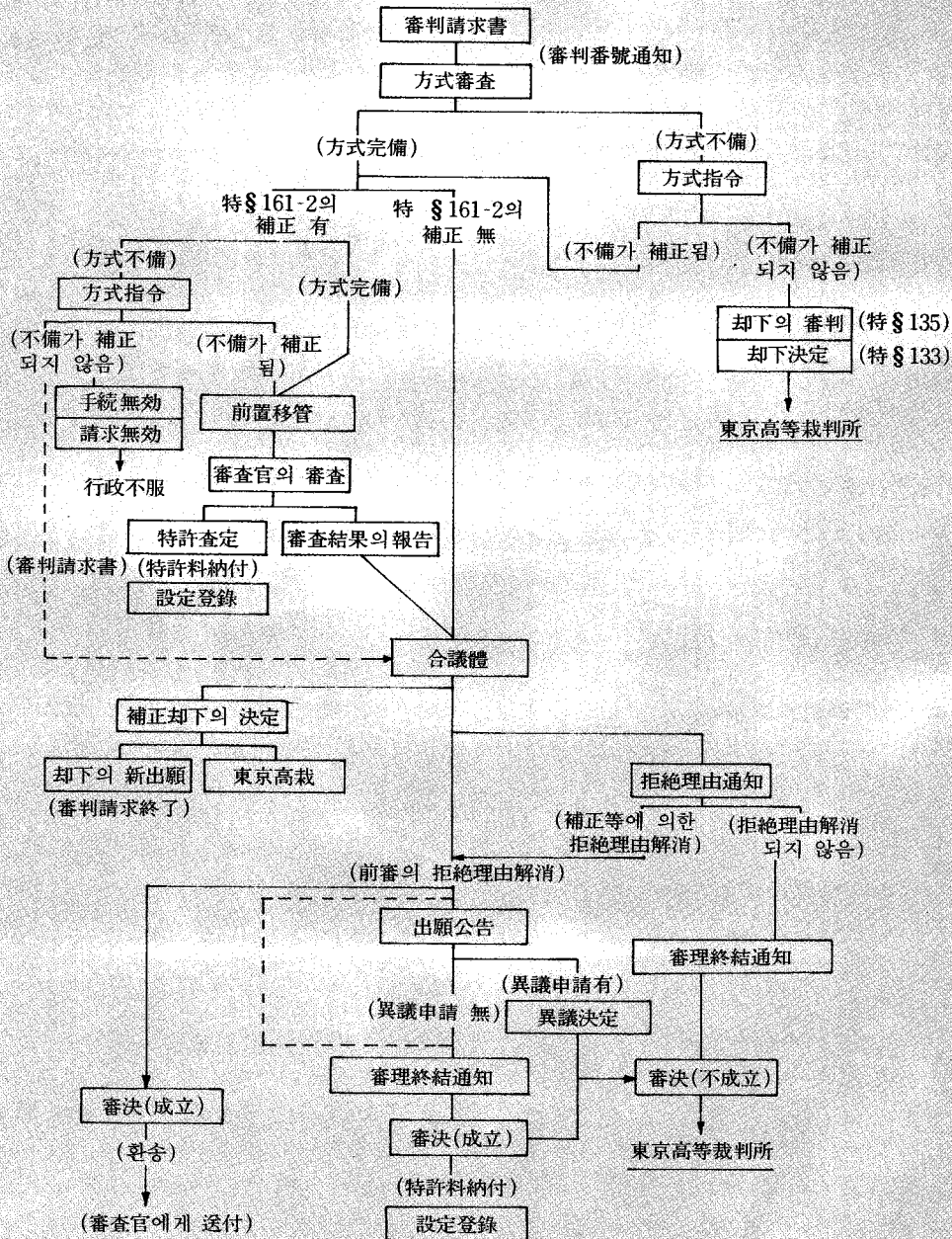
(1) 審判請求의 方式(特131條, 132條, 195條, 特施則 1條~4條, 46條, 樣式 26)

審判請求書를 特許廳長官에게 提出
 必要的 記載事項
 必要 添附書類
 手數料의 納付
 審判節次의 主體
 ① 當事者能力과 節次能力
 ② 當事者…(請求人 및 權利者)
 ③ 共同審判
 ④ 代理人…(法定代理人, 委任代理人, 復代理人, 特許管理人 等)
 審判의 請求期間(特124條)
 (2) 審判番號의 附與 및 審判官의 指定과 그 通知(特137條, 特施則 48條)
 (3) 予告登錄(公報掲載) (特登令 3條, 27條, 特193條)
 (4) 特許(登錄)에 關하여 登錄된 權利를 갖고 있는 者에 對한 通知(特123條 3項)
 (5) 審判請求書의 方式調査와 補正命令 및 尋問 (特17條, 133條, 134條)
 (6) 審判請求書의 決定에 의한 却下(特133條)
 (7) 審判請求의 審決에 의한 却下(特 135條)
 (8) 審判請求書副本을 被請求人에게 送達(特 134條)
 (9) 審判事件答辯書의 提出과 그 副本을 請求人에게 送達(特134條, 特施則 47條, 樣式 27)
 (10) 當事者에 對한 尋問과 變박서의 提出(特17條, 134條, 特施則 9條, 9條의 2, 11條, 14條, 樣式2, 3, 4, 5, 6, 8)
 (11) 審判官의 除斥 또는 忌避의 申請과 그 決定(特140條, 142條, 143條)
 (12) 口頭審理와 書面審理(審判에 있어서 審理의 方式) (特136條, 145條, 146條, 147條, 特施則 51條~53條)
 (13) 證據調査 및 證據保全(特150條, 151條, 169條, 170條, 特施則50條, 53條, 56條)
 (14) 職權에 의한 審理(特152條, 153條)
 (15) 審判參加申請과 그 決定(特17條, 148條, 149條, 195條, 特施則 49條, 55條, 57條,

樣式 28)
 (16) 審判節次의 中斷 또는 中止와 續行(特21條~24條, 特施則 17條)
 (17) 審判節次의 中止(特 168條)
 (18) 審判의 併合과 分離(特 154條)
 (19) 審判請求의 取下(特 155條, 193條, 特施則 54條, 特登令 54條)
 (20) 審理의 終結通知(審理의 再開) (特156條)
 (21) 審決(審判의 終了) (特 157條, 167條)
 ① 審決에 의한 終了
 (i) 審判請求를 不適法한 것으로서 却下한 審決
 (ii) 請求를 容認한 審決
 (iii) 請求를 棄却한 審決
 ② 審判請求의 取下에 의한 終了
 ③ 審決의 効力
 (i) 審決의 確定
 (ii) 審決의 對世의 効力
 (iii) 一事不再理의 原則
 (22) 審判費用의 負擔(特169條)
 (23) 確定審決의 登錄(公報掲載) (特登令 1條, 16條, 特193條)
 (24) 物件의 返還(特施則 15條)
 (25) 審判費用額의 決定請求와 그 決定(特169條, 170條, 特施則 56條)
 (26) 其他
 審査前置制度 (特 161條의 2~161條의 4)
 補正할 수 있는 期間의 制限 (特 17條, 17條의 2, 17條의 3)
 4) 再審制度
 (1) 再審制度의 意義
 再審制度란 審決이 確定된 後에 있어서도 一定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不服을 申請하여 確定審決을 變복할 수 있는 制度이다. (特 171條)
 再審은 本來 訴訟法上의 概念으로서 判決이 確定된 後에 特別한 理由에 근거하여 認定되는 非常의 不服申請方法이다.
 訴訟節次의 重大한 暇疵等 一定한 理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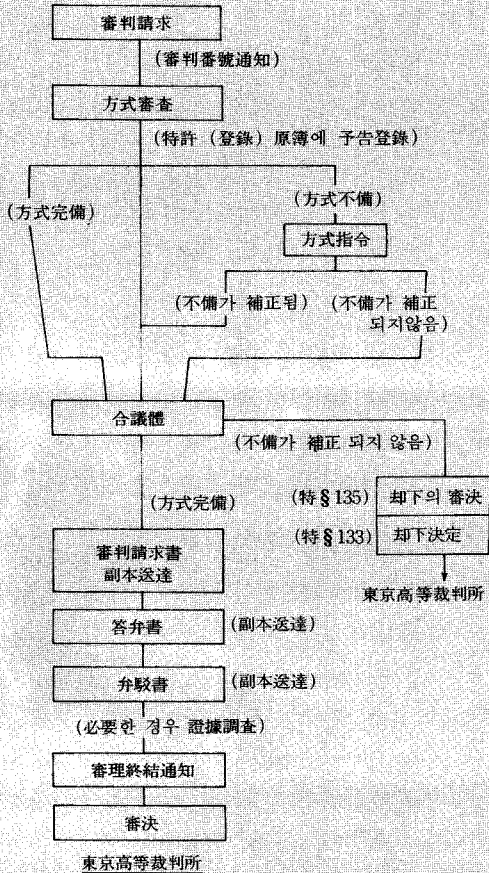
審判請求에서 審決까지의 節次圖

一. 拒絕査定不服審判의 경우



(注) 意匠登録에 대해서는, 出願公告制度가 없음.

二. 無効審判等の 경우



있는 경우에 限하여 再審의 請求를 認定하고 있다. 特許法上으로도 確定審決을 不變의 것으로 하는 것이 妥當하지 않음은 判決의 경우와 同一한 이유로서, 特許法에도 再審制度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審判事件의 確定審決 및 再審의 確定審決에 對해서도 再審의 理由가 있으면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2) 再審의 理由

再審을 請求할 수 있는 理由로서는 審判節次에 重大한 暇疵가 있는 때, 審決의 基礎로 된 審判資料에 重大한 暇疵가 있는 때, 審判의 請求人, 被請求人이 共謀하여, 第3者의 利益을 害할 目的으로 審決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이 理由에 對해서는 民事訴訟法 第420條 第1項 및 第2項과 第421條가 準用된다. (特171條·172條)

(3) 再審의 請求人

再審의 請求人은 審決을 받은 當事者이다. 詐害行爲에 의하여 審決을 받게된 場合に 當該 第3者는 그 確定審決에 對한 再審請求의 適格을 취득한다. (特 172條 第1項)

(4) 再審 請求期間

再審을 請求할 수 있는 期間을 無制限으로 하는 것은 法秩序上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請求期間은 請求人이 再審의 理由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日以内, 審決이 確定된 後 3年以内로 制限하고 있다. (特 173條)

(5) 再審節次

再審節次는 審判節次에 準하지만 審判의 種類에 따라 準用規定을 달리하고 있다. (特 174條)

(6) 再審에 의해 回復된 特許權의 効力制限 (特 175條, 176條)

5) 判定

(1) 判定制度의 意義

判定이란 特許發明의 技術的 範圍, 登錄實用新案의 技術的 範圍, 登錄意匠 및 이것에 類似한 範圍 및 商標權의 効力에 關하여 特許廳에 對해 特許廳의 判斷을 求하는 制度이다. (特 71條 第1項, 實 26條, 意25條, 商 28條 第1項).

特許發明, 登錄實用新案의 技術的 範圍는 出願書에 添附한 明細書의 特許 또는 實用新案 登錄의 請求의 範圍에 근거하여 定하고, 登錄意匠의 範圍는 出願書 및 出願書에 添附한 寫眞, 모형 또는 見本에 의해 나타난 意匠에 의거하여 定하여야 한다. 또 登錄商標의 範圍는 出願書에 添附한 書面에 表示된 商標에 의거하여 定해야한다. (特 70條, 實 26條, 意 24條, 商 27條 1項)

判定은 舊法의 權利範圍確認審判에 비견되는 것이지만 權利範圍確認審判과의 커다란 相違點은 判定이 여하한 法律的 拘束力을 갖지 않고 있음을 明確히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特許聽의 判定은 단순한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갖는 것도 이러한 생각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判定을 求하는 制度의 運用은 舊法의 權利範圍確認審判制度와 거의 同一한 方式으로 行해진다.

다시말해서 判定의 請求는 一定한 技術內容이 特定 特許權의 技術의 範圍에 屬하는 가의 여부에 대한 判斷을 求하는 경우로 限定되며 그 判斷에 있어서는 對審의인 構造를 취하고, 또 指定된 審判官에게 除斥原因이 있는 경우에는 除斥申請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特施令 3條)

(2) 審理節次

① 判定請求가 있는 때에 特許廳長官은 3 名의 審判官을 指定하여 그 判定을 하도록 해야 한다. (特 71條 2項, 特施令 5條)

② 判定의 企正을 期하기 위하여 審判官의 指定에 있어서 特許廳長官은 그 判定事件에

關係있는 審判官을 指定해서는 아니된다. 또 指定된 審判官에 故障이 있는 때에는, 特許廳長官은 그 指定을 解하고 다른 審判官을 補充하여야 한다. (特施令 3條, 4條)

③ 特許廳長官은 指定된 審判官中 1名을 首席審判官으로 指定해야 한다. 首席審判官은 그 判定事件에 관한 事務를 총괄한다. (特施令 6條)

④ 判定의 審理는 원칙적으로 書面審理에 의하여야 하지만, 首席審判官은 當事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 또는 職權으로 口頭審理를 할 수도 있다. (特施令 8條, 9條)

⑤ 當事者가 申請하지 않은 理由에 대해서도 審理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首席審判官은 審理結果를 當事者에게 通知하고 相當한 期間을 指定하여 意見を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特施令 10條)

⑥ 判定의 審理가 終了된 때는 一定한 事項을 記載한 文書를 作成하고 審判官이 記名捺印한다. 特許廳長官은 그 文書의 謄本을 當事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特施令 11條) <계속>

우수발명시작품 제작지원 안내

-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개인 발명인·중소기업자로서 아래 발명·고안을 보유한 자
 - 특허·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되었을 것
 - 당해 권리가 시작품 제작 지원연도말까지 존속되는 것
- ◎ 신청기간 : 1990년 1월 1일~31일
- ◎ 신청장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중앙중묘빌딩) 한국발명특허협회 발명진흥부 (전화 : 557-1077~8)
- ◎ 보조금교부기준 : ▲ 영세발명인 및 학생 발명은 제작비용의 전액범위 내
▲ 개인발명인은 제작비용의 80%범위 내

▲ 중소기업자는 제작비용의 50%범위 내

◎ 보조금교부한도 : 1인당 1,000만원 이내

제18회 제네바 국제발명전 참가안내

- ◎ 주 관 : 한국발명특허협회
- ◎ 기 간 : 1990. 3. 30~4. 8(10일간)
- ◎ 장 소 : 제네바시전시회의센터(Palexpo)
- ◎ 출품대상 :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
- ◎ 출품방법 : 직접참가전시, 위탁출품전시
- ◎ 출품범위 : 발명(고안)·신기술로서 그 제품이나 사진, 도면
- ◎ 신청서 배포 및 접수
 - ▲ 배포 및 접수 : 1990. 1. 1~20일
 - ▲ 신청장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 한국발명특허협회 발명진흥부
 - Tel : 557-1077~8, 567-8267
 - ▲ 신청방법 : 소정양식에 의거 직접 또는 우편 신청(도착분에 한함)